

## Ⅱ. 규제 제정 의미와 시사점

■ 사문화되었던 행정지도 운영규칙 등을 부활시키고 이의 엄격한 준수를 위한 장치를 설정함.

- 운영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
- 옴부즈만 제도(외부감시), 금융현장지원단(내부감시), 외부평가 및 상벌제도·교육(내부통제)으로 다층의 조치를 취함.
- 그림자 규제가 가능했던 것은 그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임.

■ 따라서 금융개혁의 주요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운영규정에 의해서 조치될 수 있음.

- (예시 1) 가격 및 상품에 대해서 그림자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
  - 운영규정 제7조 ⑥항 금융회사 내부경영에 대한 개입 금지 위배
  - 보험회사는 옴부즈만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현장점검반에 통보
  - 외부기관 실태평가를 통해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공개
  - 해당 공무원 인사조치
- (예시 2) 모범기준에 대한 감독당국의 개입이 있을 경우
  - 운영규정 제③항 단체에 대한 개입 금지 위배

- 이번 운영규정 제정으로 **금융개혁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**
  - **옴부즈만 등 여러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임.**
  
- 그러나 **보험상품에 대한 개입금지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며, 모호한 소비자 보호 기준으로 가격, 배당 및 인사에 대한 개입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아쉬움이 있음.**
  - **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행정지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리·수수료 등 보험회사가 정하는 보험상품의 가격, 배당, 그리고 보험회사의 인사에 개입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.**
  - **소비자 보호의 목적으로 보험상품 가격과 함께 상품 형태에도 그림자 규제가 존재하여 왔음.**
  
- **보험회사들은 자율경쟁과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, 금융당국의 운영규정 취지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함.**
  - **금융회사는 향후 행정지도 공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.**

① 행정지도인지 감독행정인지 여부 및 관리번호	⑤ 관련 법령
② 내용 및 목적	⑥ 금융행정지도의 원칙 내용
③ 유효기간	⑦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사, 배당, 금리, 수수료 개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지도 사유
④ 담당자 정보(금융위: 과장급 이상, 금감원: 국장급 이상)	

※ 감독행정 공문은 “③ 유효기간”을 제외하고는 동일